

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

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4.

발 의 자 : 박성중 · 하영제 · 김영식
김병욱 · 장제원 · 홍석준
최춘식 · 태영호 · 전봉민
백종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의 연결점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

이에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,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3조).

나.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- 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과 창업, 콘텐츠 제작·유통 지원 등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·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사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과학기술이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과학기술문화”란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계하는 제반 활동으로, 과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적 소양을 제고하는 활동 및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을 말한다.
2. “과학기술문화산업”이란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창작·제작·유통·전시·소비·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문화 관련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인과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

치단체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문화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국민의 과학 소양 증진을 위한 정책
3. 과학기술문화 서비스 및 산업 육성
4.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
5. 과학기술문화 시설 및 정보 등 인프라 확충
6. 과학기술문화 조사·연구와 개발
7. 지역 간 과학기술문화 격차 해소 및 진흥
8.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문화 발굴·육성
9.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 소외계층의 과학기술문화 접근 지원

10.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그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) ①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

2.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,
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위원장이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
한다.

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실태조사 실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
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 및 관련
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,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
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
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과학기술문화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2. 과학기술문화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하여 설립, 운영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, 콘텐츠 제작·유통 지원

2. 해외진출 지원
3.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4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
5.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1조(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과학기술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우수 과학기술문화 상품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과학기술문화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수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상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, 전시지원, 투자알선, 해외진출지원,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업을 할

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상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⑤ 우수상품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·절차,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과학기술문화이용권의 발급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문화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및 대상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·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「사회복지사

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과학기술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이용권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지역균형발전과 기반 조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간 과학기술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과학기술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·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⑤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전담기관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포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기념행사) ① 국민의 과학기술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4월을 과학기술문화의 달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매년 4월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